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63
----------	-----

발의년월일 : 2011. 1. 31.

제안자 : 박승희·김병철·제갈원영 의원
(찬성자 14인)

□ 제안이유

- 가. 시행자 위주의 도로점용공사는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 및 사고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하기위하여 도로점용공사의 계획단계부터 공사 중 교통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나.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통해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 하고 시민의 사회적비용 절감은 물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적용대상을 도로 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 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 하는 공사로 함.(안 제3조)
- 나. 공사를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제출 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거 구성·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9조)

□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청이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4. "공사시행자" 라 함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 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공사
 - ② 도로점용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로 폭 20미터 이하의 도로와 연결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도로 폭 20미터 이하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시행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공사 시행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도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정의) ○ 제20조(도로 관리청) ○ 제38조(도로의 점용) ○ 제8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 제99조(벌칙) <input type="checkbox"/> 도로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조(점용허가의 신청) ○ 별표 1의2(도로점용기준) 제4호 <input type="checkbox"/> 도시교통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26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input type="checkbox"/>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조5(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도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2. "국도대체우회도로"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3. "국가지원지방도"란 지방도(地方道) 중 중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시도·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4.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도로 원표(元標), 이정표, 수선 담당 구역표, 도로 경계표와 도로표지
 - 나. 도로의 방호(防護) 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 다. 도로에 연접(련접)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 라.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5.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서로 그 효용을 함께 하는 제방, 언제(堰堤),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渡船場),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 1. 고속국도
- 2. 일반국도
-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 4. 지방도
- 5. 시도(市道)
- 6. 군도(郡道)
- 7. 구도(區道)

제11조(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도·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전용도로
- 2.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 3. 도시의 주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와 주요 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에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20조(도로 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3.22>

- 1. 국도(지선을 포함한다): 국토해양부장관
 - 2. 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 3. 그 밖의 도로 :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

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22>

1. 고속국도
2.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
3.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국도
4. 국도대체우회도로

제3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8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5조·제34조·제38조·제43조·제45조·제49조제3항·제52조·제58조·제59조·제62조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34조·제38조·제59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83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83조나 제84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점용기간·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별표 1의2] <개정 2010.09.17>

도로점용기준(제28조제1항 관련)

4. 공사방법

- 가.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나.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다.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을 켜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승인관청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중전 제19조는 제37조로 이동 <2008.3.28>]

제26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5(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이하 "교통영향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승인관청등"이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승인관청등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⑥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이 소집하되,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⑧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은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7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승인관청등이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은 20미터 이상 도로를 1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되며 교통소통대책수립을 위한 교통현황분석 및 교통관리계획 수립 등에 따른 용역비용 발생

2.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조례 시행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대상의 파악이 어려우며 점용지역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용 산출 어려움

4. 작 성 자

- 문화복지위원회 박 승희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김 병철 의원, 제갈원영 의원